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계약업무 이행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용 집행방법 부적정

울산광역시 ○○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¹⁾을 실시하면서 울산광역시 소재 “○○병원”을 단독으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협약서(2012. 6. 22.) 내용을 근거하여 계약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 1.부터 2017. 12. 30.까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용으로 총 832,490천원을 [표1]과 같이 일반지출로 집행하였다.

[표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비 고
2013년	153,760	12,780	38,700	47,200	28,620	26,460	
2014년	155,990	15,010	40,090	43,700	29,450	27,740	
2015년	160,940	15,010	42,800	43,510	30,020	29,600	
2016년	178,800	16,600	52,000	47,600	32,400	30,200	
2017년	183,000	20,000	52,800	47,000	33,000	30,200	
총 계	832,490	79,400	226,390	229,010	153,490	144,200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1) 특수건강진단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인자(유기화합물, 중금속,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만 검진 가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거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²⁾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및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서류를 제출받아 두어야 하며,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1항에 의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하고, 동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본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도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³⁾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상기관을 선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과목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울산광역시 소재 특수건강진단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병원, ○○○병원, ○○병원

하거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소방전문 치료 센터”와의 수의계약⁴⁾ 체결 등 방법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항목·소요예산·MOU체결 등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2. 공사·구매 등 계약업무 처리 시 관계법령 미준수

울산광역시 소방관서(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표2]와 같이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5건의 공공건축물(소방청사)을 건립하고, 동 기간 동안 [표3]과 같이 공사·물품·용역 등 4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공공건축물(소방청사) 신축현황

회계연도	사 업 명	사업예산	사업규모	발주부서	비 고
2015	○○119안전센터 건립 공사	2,774,502,000	건축면적 : 521.84㎡ 연면적:962.20㎡ 층수:지상3층	○○소방서	
2017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1,847,712,000	건축면적 : 659.91㎡ 연면적:998.59㎡ 층수:지상3층	○○소방서	진행중
2015	○○119지역대 신축공사	2,204,600,000	건축면적: 495.76㎡ 연면적:987.23㎡ 층수:지상3층,지하1층	○○소방서	
2016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2,520,000,000	건축면적: 523.53㎡ 연면적:969.66㎡ 층수:지상3층,	○○소방서	
2016	○○119지역대 이전 신축	1,450,000,000	건축면적 254㎡ 연면적463㎡, 층수:지상2층	○○소방서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3]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현황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제1항 “지역 소방전문 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적용사유에 대하여 그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회계연도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 약 상 대	계약기관	비고
2014	2014년 식당취사인부 용역계약	169,800,000	2014-01-03	(주)○○푸드	○○	용역
2014	2014년 ○○소방서 식당취사인부 용역	184,900,000	2014-01-03	(주)○○○○○	○○	용역
2014	2014년 식당 취사인부 용역 계약	141,700,000	2014-01-03	(주)○○○○○	○○	용역
2014	2014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118,000,000	2014-01-03	○○○○○	○○	용역
2014	○○119안전센터 신축 설계용역	78,683,210	2014-02-25	○○건축사사무소	○○	용역
2014	소방차량 적재장비(적외선카메라외 3종)구입	87,000,000	2014-12-04	○○○	○○	물품
2014	소방차량 적재장비(공기공급장치 외 3종)구입	75,596,400	2014-12-08	○○○○○	○○	물품
2014	소방차량 적재장비(4종) 구입비용 지출(입찰)	89,200,000	2014-12-15	○○코리아	○○	물품
2014	소방차량 적재장비 구매(입찰) 대금 지급	75,522,000	2014-12-17	○○○○○	○○	물품
2015	2015년 식당취사인부 용역계약	193,900,000	2015-01-05	(주)○○푸드	○○	용역
2015	2015년도 식당취사인부 용역	180,192,680	2015-01-05	(주)○○푸드시스템	○○	용역
2015	2015년 식당취사인부 용역계약	146,500,000	2015-01-05	(주)○○푸드	○○	용역
2015	2015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124,945,000	2015-01-06	○○○○○○(주)	○○	용역
2015	2015년 상반기 소방피복 구매	64,790,100	2015-01-29	○○기업사	○○	물품
2015	○○119지역대 이전신축 설계용역	71,739,900	2015-03-16	(주)○○○엔지니어링	○○	용역
2015	○○119안전센터 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1,514,726,340	2015-04-24	○○종합건설(주)	○○	종합공사
2015	○○119안전센터 건립공사(전기)	82,052,800	2015-04-24	○○전기	○○	전기공사
2015	○○구조대 증축공사	518,500,000	2015-05-29	○○○건설	○○	종합공사
2015	○○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건축)	1,264,010,000	2015-10-30	○○종합건설(주)	○○	종합공사
2015	○○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전기)	107,681,500	2015-11-02	○○전력(주)	○○	전기공사
2016	2016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계약	258,990,000	2016-01-05	(주)○○○	○○	용역
2016	2016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163,269,000	2016-01-05	○○푸드시스템	○○	용역
2016	2016년도 식당조리위탁 용역 계약	195,925,248	2016-01-07	○○○푸드서비스	○○	용역
2016	2016년 식당 조리위탁 용역 계약	293,784,490	2016-02-04	(주)○○푸드시스템	○○	용역
2016	본서 건물 구조 보강보수 공사	278,132,000	2016-03-07	○○건설○○주식회사	○○	전문공사
2016	○○서 소방차량 매연배출시스템 공사(기계설비)	133,481,700	2016-06-30	(주)○○이노베이션	○○	전문공사
2016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93,951,000	2016-10-20	건축사사무소 ○○	○○	용역
2016	재난분야별 안전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72,000,000	2016-12-08	(주)○○○○○	○○	용역
2016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56,910,300	2016-12-27	○○구조기술	○○	용역
2017	2017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계약	288,139,520	2016-12-27	○○○○○○○	○○	용역
2017	2017년 식당 조리위탁 용역	317,795,880	2017-01-01	○○○푸드서비스	○○	용역
2017	2017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177,546,930	2017-01-01	(주)○○푸드	○○	용역
2017	2017년 ○○소방서 식당조리위탁 용역	216,748,090	2017-01-25	○○○○○○○	○○	용역
2017	구조장비(개인탈출장비) 구매	59,639,000	2017-04-04	○○○○○	○○	물품
2017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1,478,481,400	2017-04-07	○○종합건설(주)	○○	종합공사
2017	2017년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32,245,000	2017-04-10	주식회사 ○○건설	○○	전문공사
2017	○○119안전센터 신축공사(전기)	114,217,850	2017-04-11	○○전기공사	○○	전기공사
2017	○○119안전센터 신축 기본및 실시 설계 용역	110,284,000	2017-05-08	○○○○○건축 사무소	○○	용역
2017	○○119안전센터 구조 및 내진보강공사	244,890,555	2017-09-18	(주)○○건설	○○	전문공사
2017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1,847,712,000	2017-11-24	(주)○○종합건설	○○	종합공사
2017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통신)	86,773,330	2017-12-13	주식회사 ○○	○○	통신공사
2017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전기)	160,011,860	2017-12-18	(주)○○○○○	○○	전기공사
2018	2018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계약	384,226,800	2017-12-14	○○산업	○○	용역
2018	2018년 식당 조리위탁용역	446,174,820	2017-12-22	주식회사 ○○	○○	용역
2018	2018년 식당조리위탁 용역	239,209,700	2017-12-28	(주)○○○	○○	용역
2016	○○119지역대 이전신축 공사(건축분야)	599,726,780	2016-12-26	○○○종합건설	○○	종합공사
2016	○○119지역대 이전신축 전기공사	29,468,680	2016-12-26	○○○○(주)	○○	공사
2016	○○119지역대 이전 신축 통신공사	10,978,000	2016-12-26	○○정보통신(주)	○○	공사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9조⁵⁾ 제3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시 및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에서 사무를 분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⁶⁾ 제5항에 의하면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는 전문성을 보유한 시 본청에서 통합 처리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서에서는 5억원 이상의 소방청사 건립 5건 및 지방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 48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부 ○○○○부와 울산광역시 본청으로 사무분장 또는 계약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관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⁷⁾에서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9조(하부조직) 제3항 7호

6)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항(추정가격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5천만원)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0조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체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5.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나라장터 G2B)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표4]와 같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없이 전자문서에 의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4] 표준계약서 작성 내역⁹⁾

계약부서	계약연도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상대	나라장터 등록일	비고
○○소방서	2015년	○○구조대 증축 전기공사	19,910,000	○○전기공사	2003.06.07.	
	"	○○구조대 증축 통신공사	9,812,000	○○보통신	2010.03.10.	
	"	○○구조대 설계 용역	14,400,000	○○건축사무소	2009.01.22.	
	"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	5,500,000	○○건축사무소	2009.01.22.	
	2017년	○○ 지하층 공사 설계용역	3,500,000	○○건축사무소	2012.05.17.	
○○소방서	2016년	○○ 창호보강공사 설계용역	2,000,000	○○건축사무소	2002.03.27.	
	2017년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	4,880,000	○○건축사무소	2009.01.22.	
	"	○○안전센터 내진보강 설계용역	2,500,000	○○구조엔지니어링	2010.11.12.	
○○소방서	2017년	○○지역대 청사환경 공사 설계용역	3,000,000	건축사무소 ○○	2000.10.18.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시정] ①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8)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표-4]의 계약상대자 나라장터(G2B) 등록현황

② 앞으로 건축물의 시공 및 공사·물품·용역 등 사업추진 시 일정금액 이상은 관련 규정(시 사무분장)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후 계약체결 관련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